

안산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2.

제안자 : 안산시장

개정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('95.7.1)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○ 지금까지는 조례·규칙등 공포는

-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토록 하던 것을

○ 앞으로는

- 조례·규칙 공포는 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고
-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함. (안 제7조)

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
- 예산 상황 : 해당 없음
- 기타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안산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공포방법)중 "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" 를 "시보에의 게재로서 한다. 다만,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 (공포방법) 조례·규칙등은 <u>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</u>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 (공포방법) <u>시보에의 게재</u>로서 한다. 다만,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<u>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</u>로서.....</p>